

 보건복지부		보 도 자 료 6월 4일(화) 국무회의 시작(10:00) 이후		
배 포 일		2019. 6. 3. / (총 28 매)		
아동학대대응과	과 장	김 우 기	전 화	044-202-3190
	담 당 자	여 정 현		044-202-3384
노인정책과	과 장	이 상 희		044-202-3465
	담 당 자	이 준 미		044-202-3456
장애인권익지원과	과 장	신 용 호		044-202-3310
	담 당 자	장 윤 석		044-202-3305
보험정책과	과 장	정 윤 순		044-202-2710
	담 당 자	유 미 란		044-202-2706
예비급여과	과 장	손 영 래		044-202-2670
	담 당 자	문 달 해		044-202-2667
국민연금정책과	과 장	이 스 란		044-202-3610
	담 당 자	김 수 환		044-202-3601
복지정책과	과 장	임 호 근		044-202-3020
	담 당 자	정 명 현		044-202-3022
요양보험제도과	과 장	김 현 숙		044-202-3490
	담 당 자	임 은 빈		044-202-3492
자살예방정책과	과 장	장 영 진		044-202-3880
	담 당 자	김 은 나		044-202-3882
보건산업진흥과	과 장	김 주 영		044-202-2960
	담 당 자	박 지 민		044-202-2970
정신건강정책과	과 장	홍 정 익		044-202-2860
	담 당 자	신 하 늘		044-202-2861
한의약정책과	과 장	정 영 훈		044-202-2580
	담 당 자	이 호 형		044-202-2574
의료기관정책과	과 장	오 창 현		044-202-2470
	담 당 자	윤 동 빈		044-202-2474
자립지원과	과 장	방 석 배		044-202-3070
	담 당 자	김 영 식		044-202-3074
응급의료과	과 장	박 재 찬		044-202-2550
	담 당 자	김 대 욱		044-202-2558

「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6.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총 14개 법안*이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개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한의약육성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된 각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관할 행정기관의 장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 서류 규정 (안 제26조의5 제1항)
- 아동관련기관 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 서류 규정 (성범죄 범죄경력 통합 조회 포함)
 - 전력 조회 시 필요한 서류를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 추후 개편 예정

- 관할 경찰관서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6조의5 제2항, 제3항)

*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할 경찰관서가 회신할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6조의5 제4항)
- 보건복지부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하였고, 조회 시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 < 붙임 >
1.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제도
 2.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기관
 3.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이 본인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절차 및 제출 서류 규정
 - * (기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경찰관서에 취업하려는 자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확인 필요 → (변경) 취업하려는 자가 경찰관서에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 가능
-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
 - *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보건복지부 이상희 노인정책과장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행정의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성범죄의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안 제36조의2 제1항)
-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체적 폐쇄 절차를 마련 (안 제36조의3)

* 폐쇄 요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폐쇄요구를 받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명확히 내용을 알리고, 운영자에게 소명 및 이의제기 기회를 마련

-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전문기관 위탁* 및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추가

* 장애인 지원 사업 등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 (안 제20조의4)

-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절차 간소화를 하였으며, 피해장애인 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됨으로써 아동·노인 쉼터 등과 통일된 법체계를 마련하였다 ”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하여 정함(종합병원과 동일) (안 별표 2 제1호)

< 종별·인실별 본인부담률 >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	비급여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병원·한방병원		40%	30%	20%	20%
치과병원·의원		비급여		20%	20%

- 2·3인실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안 제19조제3항),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 (안 별표 2 제3호)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은 7월 1일 입원료부터 적용되며, 관련 개정규정(안 제19조제3항, 별표 2 제1호·제3호)도 7월 1일부터 적용

-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하는 규정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1월부터 적용** (안 별표 2 제5호)

* '20.1.1. 이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 참고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주요내용 >

- **(총괄)** 1,775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 적용
-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 **(입원료)**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
- **(환자부담)** 2인실의 경우 7만90원에서 2만752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6880원에서 1만7690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감소**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예시]

(단위 : 원)

구분		간호등급 7등급		간호등급 6등급	
		2인실	3인실	2인실	3인실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70,090	46,880	77,850	52,920
보험 적용 이후	입원료(A)	68,790	58,970	72,410	62,070
	본인부담률(B)	40%	30%	40%	30%
	환자 부담(A*B)	27,520	17,690	28,960	18,620

- 보험 급여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 마련 (안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제외 대상이 되도록 하고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
 - *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기준과 동일
-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안 제75조 제1항, 별표 6)
 - 포상금 지급 대상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 추가
 - *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징수금 규모에 따라 약 20 % 규모
-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비급여였던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민들의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4.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금 변화

5.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포상금의 지급 기준 (시행령 별표 6)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체납처분 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 (‘19.6.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체납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 (안 제65조의2 신설)

- 장애등급제 폐지('19.7.1. 예정)에 따라,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자료**(장애인연금은 법상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를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별표2의3 제2호타목)
 - *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
 - ** 그간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등록자료를 요청하여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심사에 활용
- 보건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유족연금이나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심사가 종전과 같이 간소한 절차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편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률의 종류에 「건강가정기본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범위 확대
 - * 현행 법률 및 시행령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28개 법률을 규정
-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채용광고와 다르게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개정)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 보건복지부 임호근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채용광고와 다르게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채용 불이익을 없애고 직업안정 등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장기요양기관은 기존 급여계약서 외에 수급자 상담을 통해 적절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 수급자의 욕구·기능 상태에 맞추어 제공할 서비스 내용(신체활동 지원, 건강관리,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등)과 시간 등 작성

- 수급자나 가족에게 급여 외 행위*를 요구받아 장기요양요원이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상담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업무전환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 수급자와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김장, 밭일 등) 등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 외 행위 제공을 요구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장애등급제 개편(기존 1~6등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단순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감경 대상을 '1~2등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 보건복지부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급자 욕구에 맞는 계획적인 급여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가 가능해져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한층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붙임 > 6.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규정 (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12명의 중앙행정기관장*과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
 - *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조실, 방통위,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정보 공유 범위 및 사후관리 절차·방법 규정 (안 제7조)
 - *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 경찰공무원·119 구급대원 등은 자살시도자 등에게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주소·지원 내용 등 정보 제공
 - 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관할 구역 내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 가능
 - * 당사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도록 규정
-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한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 자살유족에 대한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7. 자살 관련 보도 시 상담전화 안내문

8.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홍보자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기업의 기준 신설 (안 제2조 신설)
 - 제약기업 중 의약품 제조·수입업 없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조직, 인력 등 기준 신설
-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지위승계 심의 예외 사유 (안 제12조의2 신설)
 - 심의 예외사유로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 일체를 유지하는 등으로 정함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15조 및 별표 신설)
 - 약사법 제86조의6 제1항에 따른 부작용 피해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준용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

*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50만 원
-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기준을 신설하여 제약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 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9조 제1항 제3의3 신설)
- * 알코올, 마약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사업을 수행

-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한약진흥재단”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반영
-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가능
- 출연금의 신청, 지급, 관리 등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출연금 관련 절차 규정
-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통합 됨에 따라,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기능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이관
- 보건보건의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전통 한의약육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9. 한약진흥재단 기관 현황

10.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개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장애등급제가 폐지·시행(19.7.1)됨에 따라 현행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 에 이를 반영

* 장애등급 제1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감정위원의 소수의견을 기재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동일 내용은 삭제하고, 법에서 심사관·조사관이 “업무 보좌” 에서 “업무 지원”으로 개정되어 시행령에 이를 반영
- 산부인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징수절차 구체화
 - * 분담금 및 징수시기를 징수 1개월 전까지 공고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내용 및 위반행위 등을 해당 기관 등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3년 동안 게시하도록 신설
-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직접 제공하거나 노숙인복지시설을 통해 여성노숙인 등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서 여성노숙인 건강보호 강화
-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높임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 시설 생활인들의 보호의무 강화

<부과기준 강화 내용>

(금액단위 : 만 원)

내용	1차	2차	3차	비고
신고의무 위반 시	50→250	70→350	100→500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교육 미 이수나 교육이수로 불리한 처우 시	250	350	500	신설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 시	50→250	70→350	100→500	

-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와 여성보호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시설 생활인 등에 대한 인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1. 노숙인 복지시설 개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 실효성 및 수용성 확보하도록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연간 수입금액	(개정전) 1일 과징금	(개정 후) 1일 과징금
2억5000만 원	7만5000원	6만 원*
100억 원	21만5000원	70만 원
500억 원 초과	21만5000원	167만 원

* 과징금 산정금액의 역진성 해소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관,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운용자의 응급의료법령 준수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12. 응급의료법상 과징금 산정기준 주요내용

< 별첨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개)

붙임1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제도

□ 개 요

- **(내용)**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참고2)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
 - **(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취지)**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
 -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뒤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기간)** 10년 (다만, '19.6.12일부터는 법원이 10년이내의 범위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선고시 일정기간(취업제한 기간)을 동시에 선고*)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18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7헌마130) 후 개정됨(법률 제15889호, 2018.12.11. 일부개정, 시행 2019.6.12.)
-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음(제29조의3 제3항)
- **(취업 제한기관)**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아동관련 시설 또는 기관

붙임2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기관

관할부처	아동관련기관
교육부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18년 시행)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문화체육관광부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보건복지부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9.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같은 법 제13조의2의 정신보건센터
	10.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11.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19년 시행)
여성가족부	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자원시설,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7.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8.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20.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토교통부	22.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법무부	2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18년 시행)

붙임3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현 행		개 선
범죄전력 조회결과를 운영하려는자, 취업자등이 제출시 (법률개정)	• 전력 조회 불인정	▶	• 전력 조회 인정
범죄전력 조회 서류	• 주체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주체별로 명확하게 규정
범죄전력 조회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 근거	• 이용 근거 없음	▶	• 이용 근거 마련
범죄전력 조회시 관할 경찰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근거	• 이용 근거 없음	▶	• 이용 근거 마련

붙임4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금 변화

연번	내 용
1	70세 K씨는 상급병원에서 위절제술 수술 후 퇴원했지만,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컨디션이 난조하여, S병원(간호 6등급)에 2인실에 5박 6일 입원했다. 기존이라면 병실료 45만8050원(약 9만 원 x 5일)을 부담해야하지만, 7월 1일부터는 2인실 병실료 36만2000원(약 7만 원 x 5일)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14만4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약 31만 원의 병실료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2	58세 A씨는 허리 골절로 대구 소재 척추전문 W병원(간호 3등급)에 입원하여 척추 성형술을 받았다. 입원 당일 다인실이 없어 2인실에 6박 7일간 입원했고, 병실료 95만6280원(약 16만 원 x 6일)을 부담해야 했지만, 7월 1일부터는 병실료 63만840원(약 11만 원 x 6일)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25만2300원만 부담하면 되어 약 70만 원의 병실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3	77세 L씨는 서울 소재 C병원(간호 1등급)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약 1주일의 입원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없어 2인실을 예약했고, 8일 동안 91만9520원 (약 13만 원 x 7일)의 병실료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병원 2인실도 보험이 적용되어 8일간의 병실료 89만610원(약 13만 원 x 7일)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35만 6230원만 부담 하면 된다. 약 56만 원의 병실료 부담이 경감되었다.
4	55세 O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디스크를 진단받고 추나치료를 위해 강남에 소재하는 한방척추 전문병원 J병원(간호 5등급)에 입원하게 되었으나, 일반병실이 없어 2인실에 입원했다. 3박 4일간의 병실료만 56만5470원(약 19만 원 x 3일)을 부담해야 했으나, 7월 1일부터는 O씨가 부담해야 하는 병실료가 28만5390원(약 10만 원 x 3일)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11만4150원으로 줄어 기존보다 약 45만 원이 경감된다.

붙임5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포상금의 지급 기준 [시행령 별표 6]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신고인 유형	지급기준	
	징수금	포상금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times$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times$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times$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가. 요양기관 관련자 1)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times$ 30/10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times$ 20/100]
	5천만원 초과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times$ 10/100] 다만,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나. 요양기관 이용자: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1만원
	2만5천원 초과	징수금 $\times$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times$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times$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times$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비고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붙임6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 (목적) 고령, 노인성 질병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

*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4.27 제정, 2007.10.1. 시행

- (대상자)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②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이용절차) 인정신청(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 인정조사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등급인정결정 → 급여이용

- (수급자수) '18년말 기준 약 67만 명(전체 노인인구의 8.8%)

- 장기요양기관 현황

- 입소시설 5000여 개소, 재가시설 2만7000여 개소 지정·운영 중

- '18.11월 기준 요양시설 5,313개(전체 정원 179,998명, 현원 154,911명)

- '18.11월 기준 재가기관 27,833개(재가급여 종류 기준)

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	복지용구
27,833	12,258	9,629	686	3,165	181	1,914

붙임7

자살 관련 보도 시 상담전화 안내문

※ 자살 관련 보도 시 상담전화 안내문 게재 요청 드립니다.

<상담전화 안내 문구>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1393 '18.12.27. 개통

붙임8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홍보자료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결엔 **1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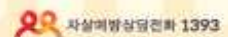
24시간 자살상담전화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이 가능한 1393은
자살을 생각하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동료'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응급서비스 112, 119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결엔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



붙임9

한약진흥재단 기관 현황

□ 설립목적

-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연혁

- 한약진흥재단 설립('15.11.27.)
 - * 한국한방산업진흥원(경산)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장흥)의 기능·예산·인력을 통합하고 한의약정책본부(서울)를 신규 설치
- 한약진흥재단 출범('16.1월)
- 기타공공기관 지정('17.2월)
-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 변경('19.6.12. 예정)

□ 일반현황

- 조직(4본부 4부 2센터 12팀 1사업단)
- 인력

('18. 7. 30. 현재 / 단위 : 명)

구분	계	임원	직원						
		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70	1	2	2	4	16	21	17	7
현원	계 65	1	-	-	2	13	23	23	3
	본원 40	1	-	-	1	8	11	18	1
	서울 7	-	-	-	-	1	6	-	-
	장흥 18	-	-	-	1	4	6	5	2

※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위촉직 등 89명은 별도 관리(공중보건의 3명 별도)

붙임10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및 기능

- (설치근거) 한의약육성법 제4조('05.08.03.구성)
- (기능) 한의약육성종합계획 등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

□ 위원회 개요

- (구성)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20명** (당연직10, 위촉10)
- (자격요건)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위촉 (19명)

당연직 (총 10명)	보건복지부(차관/한의약정책관), 기획재정부(복지예산심의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 농촌진흥청(연구정책국장), 대구광역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위촉직 (총 10명)	소비자단체 2명, 유관단체 4명, 연구계 3명, 학계 1명

- (회의) 연 1회 이상 *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 (심의·의결) 과반수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붙임11 노숙인 복지시설 개관

□ 노숙인 시설 현황

- (노숙인) 노숙인이란 상당한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거리노숙인) 또는 노숙인 시설을 이용·생활하는 사람(시설노숙인) 등

< 지역별 노숙인수 현황('18.12)>

(단위 :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0,801	3,628	784	1,014	680	158	315	41	111	947	307	729	144	233	683	329	540	158
노숙인	자활	1,684	930	75	108	35	20	104	30	-	235	64	14	24	43	-	2	-
	일시보호	1,047	714	25	27	2	1	26	5	6	51	13	8	59	5	1	2	85
	거리	895	215	127	123	117	19	35	6	4	151	24	3	61	5	1	-	4
	시설	7,175	1,709	557	756	526	118	150	-	101	510	206	704	-	180	681	325	451
쪽방주민	5,664	3,183	879	718	433	-	451	-	-	-	-	-	-	-	-	-	-	-

- (노숙인시설)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 또는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 노숙인 시설 등을 통하여 주거·급식·의료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1.6.7)됨에 따라
부랑인복지사업('75년~)과 노숙인복지사업('98년~) 통합

<노숙인 시설의 유형>

시설유형	시설기능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 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병원진료 연계, 생활물자 지원·보관 등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
노숙인자활시설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지원

노숙인재활시설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
노숙인진료시설	노숙인 등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심리상담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리주체) '05년 노숙인 지원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중증도가 높은 중증노숙인 시설(재활, 요양시설) 이외의 시설 및 거리노숙인 등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노숙인 사업 및 예산 현황>

구 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사업목적	(구)부랑인 보호, 재활	노숙인 보호, 자활, 상담
사업주체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사업대상	7,175명(재활·요양, '18.12)	3,626명(자활·일시보호·거리, '18.12)
시설현황	노숙인재활·요양시설 57개소	노숙인자활시설 60개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0개소 일시보호시설 8개소
사업내용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운영비 (인건비, 운영, 자활프로그램, 기능보강)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운영비 등	자활시설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운영, 급식, 기능보강)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활사업 등
사업예산	'19년, 총 61,630백만원 (국비40,585 + 지방비 21,045)	'17년, 총 77,781백만원 (지방비 100%,)

붙임12 응급의료법상 과징금 산정기준 주요내용

□ 추진 배경 및 경과

- 응급의료법상 과징금 상한액(5천만원→ 3억원)이 조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공정성, 실효성 및 수용성 확보하도록 개선

연간 수입금액	(개정전) 1일 과징금	(개정 후) 1일 과징금
2억 5천만원	7.5만원	6만원*
100억원	21.5만원	70만원
500억원 초과	21.5만원	167만원

* 과징금 산정금액의 역진성 해소

□ 주요 내용

- (상한액) 5천만원 → 3억원(법률 제57조제1항 개정)
- (과징금 산정기준) 업무정지기간 × 1일당 과징금
 - (업무정지기간) 6개월 이내(현행과 동일)
 - (1일 과징금) 연간 수입금액 기준 산출
 - 최저등급(1등급) : 3만원 → 6만원
 - 최고등급(20등급) : 21.5만원 → 167만원
 - (연간 수입금액)
 - 최저등급(1등급) : 5천만원 이하 → 2.5억원 이하*
 - 최고등급(20등급) : 90억원 초과 → 500억원 초과*

* 응급의료기관 수입액 분포 및 과징금 부과 실효성 등 고려

□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등급	연간 수입금액	1일 과징금액 (단위 : 원)	등급	연간 수입금액	1일 과징금액 (단위 : 원)
1	5천만원 이하	30,000	1	2억5천만원 이하	60,000
2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5,000	2	2억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110,000
3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60,000	3	5억원 초과 ~ 8억원 이하	180,000
4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75,000	4	8억원 초과 ~ 11억원 이하	230,000
5	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90,000	5	11억원 초과 ~ 14억원 이하	270,000
6	4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15,000	6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290,000
7	5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130,000	7	17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300,000
8	6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140,000	8	2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0,000
9	7억원 초과 ~ 8억원 이하	150,000	9	50억원 초과 ~ 80억원 이하	600,000
10	8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60,000	10	80억원 초과 ~ 110억원 이하	700,000
11	9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70,000	11	110억원 초과 ~ 140억원 이하	800,000
12	10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75,000	12	140억원 초과 ~ 170억원 이하	900,000
13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180,000	13	17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000,000
14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185,000	14	200억원 초과 ~ 230억원 이하	1,100,000
15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90,000	15	230억원 초과 ~ 260억원 이하	1,200,000
16	50억원 초과 ~ 60억원 이하	195,000	16	26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1,300,000
17	6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200,000	17	300억원 초과 ~ 350억원 이하	1,400,000
18	70억원 초과 ~ 80억원 이하	205,000	18	35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1,500,000
19	80억원 초과 ~ 90억원 이하	210,000	19	4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1,600,000
20	90억원 초과	215,000	20	500억원 초과	1,670,000